

#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18
------	------

발의일자 : 2024. 4. 15.

발 의 자 : 정재동 의원

찬 성 자 : 장규권 의원

## 1. 제안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시행(시행 2022. 12. 1.)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 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범위를 추가 확대하며, 지원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제명 변경을 반영함(안 제1조).

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7호 ~ 제14호 신설).

다. 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제1호 ~ 제4호).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8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1조의2, 제66조의4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4. 4. 16. ~ 4. 2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를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
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결손가정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10.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11.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2.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

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방  
및 안전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3조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  
으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청장”을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으로 한다.

1. 전기, 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  
· 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노후  
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 6.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1조(목적) ----- -----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 ----- ----- -----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 -----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p> <p>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

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  
업실패, 결손가정의 사유로 생  
계가 어려운 사람

10.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11.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  
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2.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  
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  
주하고 있는 사람

1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소방 및 안전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  
-----  
-----

지원 및 재난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  
-----  
-----  
-----.

1. 전기, 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4. -----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17.]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934호, 2017. 7. 1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구민으로서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노인세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지원 및 재난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취약계층의 현황 파악
3. 주거형태에 따른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② 그 밖에 지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점검 및 개선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934호, 2017.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